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작성일 : 2015.12.01.

## □ 사업 개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건축주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하여 에너지 절약 건물의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환경의 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에너지 절약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적 효과를 높입니다.

신일이앤씨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 전문인력과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 등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진단과 에너지성능 평가 기술을 바탕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위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인증 종류

예비인증	본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평가된 결과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li><li>·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 신청</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준공도서를 바탕으로 현장실사를 통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li><li>·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li></ul>

## □ 진행 절차



□ 에너지 효율 등급

등급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 (kWh/m <sup>2</sup> 년)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1+++	60 미만	80 미만
1++	60 이상 90미만	80 이상 140 미만
1+	90 이상 120 미만	140 이상 200 미만
1	120 이상 150 미만	200 이상 260 미만
2	150 이상 190 미만	260 이상 320 미만
3	190 이상 230 미만	320 이상 380 미만
4	230 이상 270 미만	380 이상 450 미만
5	270 이상 320 미만	450 이상 520 미만
6	320 이상 370 미만	520 이상 610 미만
7	370 이상 420 미만	610 이상 700 미만

-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비주거용 건축물 :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 등외 등급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은 등외로 표기 한다.
- 등급산정의 기준이 되는 1차에너지 소요량은 용도별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이며, 실제 산출된 1차에너지 소요량 결과와 다를 수 있다.

##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제도

### □ 인증 대상

- 신축 및 기존 주거용 건축물
- 신축 및 기존 주거용 이외 용도 건축물

### □ 신청인

- 건축주
- 건축물 소유자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 사업주체는 시행사 등을 말한다.

### □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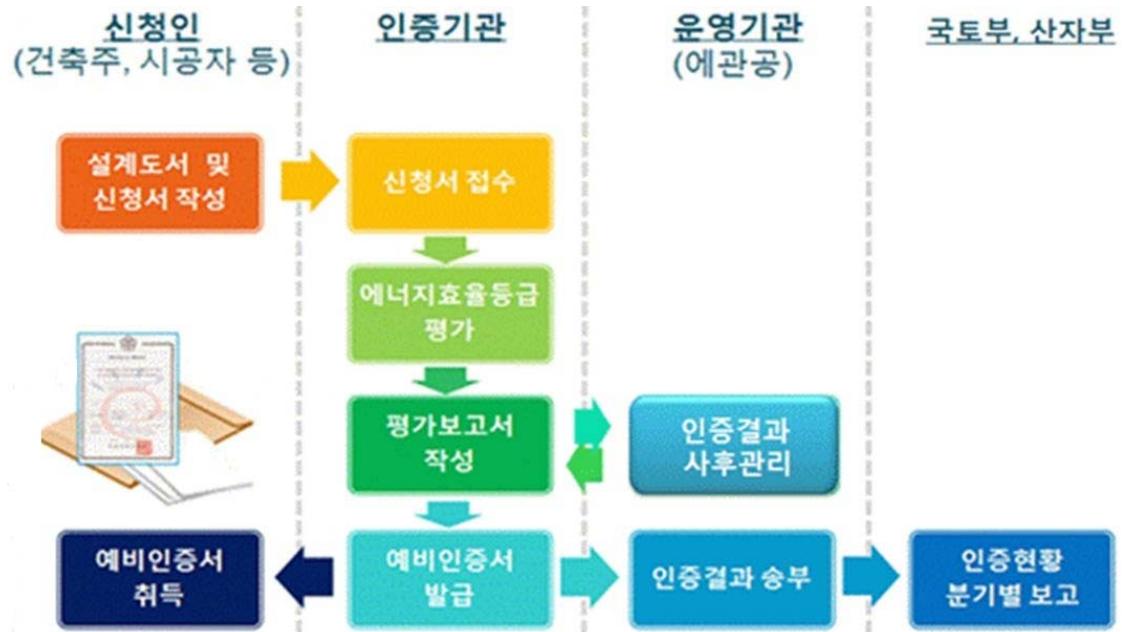
기관명	담당부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효율본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공간도시연구소
한국시설안전공단	녹색건축본부 녹색건축실
내토지주택연구원	녹색도시건축센터
한국감정원	녹색건축센터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녹색건축환경연구부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녹색환경건축센터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녹색건축센터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그린건축센터

### □ 인증 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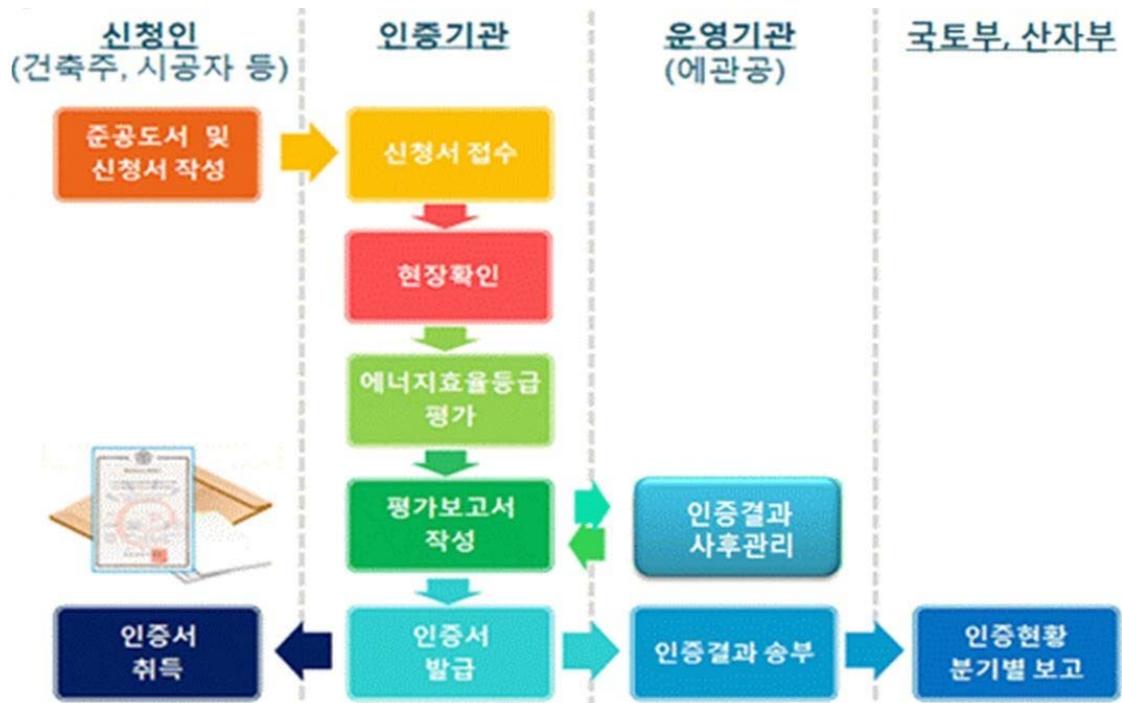
한국에너지공단 웹사이트 > 전자민원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신청에서 인증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인증 절차

○ 예비 인증



○ 본 인증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1. 건축, 기계, 전기 설계도면
2.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3. 건물 전개도
4. 장비용량 계산서
5. 조명밀도 계산서
6. 설계변경 확인서 및 설명서
7. 예비인증서 사본(해당 인증기관 및 다른 인증기관에서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서류

○ 본 인증

1. 최종 설계도면
2.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3. 건물 전개도
4. 장비용량 계산서
5. 조명밀도 계산서
6. 설계변경 확인서 및 설명서
7. 예비인증서 사본(해당 인증기관 및 다른 인증기관에서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서류

□ 평가 소요 기간

- 주거용 건축물 : 신청서류 접수 후 40일
- 주거용 이외 용도 건축물 : 신청서류 접수 후 50일